

청탁금지법을 지켜  
청렴한 경기도를  
만듭시다!

# 경기도를 위한 청탁금지법 핵심 노트

# I



## 허용되는 금품 등 (제8조제3항)

- ➔ 상급 공직자 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주는 금품 등
- 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-의례-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\*내 금품 등  
\*음식물 3만원, 선물 5만원 (농수산물 10만원), 경조사비 5만원 (회화·조화 10만원)
- 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
- 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- ➔ 동호회 등에서 내규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- ➔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, 경연 추천 상품



## 📖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?

-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(공중보건의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청원경찰 등 포함)
-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
-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-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

| 구분   | 적용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적용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행정기관 | 국회·지방의회의원<br>임기제(계약직)공무원            | 기간제 근로자<br>무기계약직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   | 기간제 교사, 운동부 지도자,<br>어린이집 원장, 유치원 교사 | 대학교 겸임교원, 명예교수,<br>학교 방과 후 교사, 어린이집 보육교사 |
| 언론사  |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                    | 용역(도급)업체 임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📖 금품 등 수수 금지

- 공직자 등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직접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받은 경우, 공직자 등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도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.

| 직무관련이 있다면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무관련이 없더라도!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
|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 100만원 (연 300만원) 이하의 금품 등 수수 금지 | 명목 관계없이 1회 100만원(연 300만원)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|



금지되는 금품 등을  
주거나 받으면!



위반행위 관련 금품 등 가액의 2배  
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
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청탁금지법을 지켜  
청렴한 경기도를  
만듭시다!

# 경기도를 위한 청탁금지법 핵심 노트

## II



### 14가지 부패빈발 분야 관련 부정청탁 금지!

#### ▶ 14가지 대상 직무

- ① 인·허가·면허 등 처리 (위법)
- ② 행정처분·형벌 부과·감경·면제 (위법)
- ③ 채용·승진 등 인사에 개입 (위법)
-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·탈락 되도록 개입 (위법)
-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의 선정·탈락에 개입 (위법)
- ⑥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(위법)
- ⑦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(위법)
- ⑧ 보조금·기금 등의 배정·지원 투자 등에 개입 (위법)
- ⑨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\*
- ⑩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·조작 (위법)
- ⑪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처리 (위법)
-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결과 조작 등 (위법)
- 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 결과 조작·묵인 등 (위법)
- ⑭ 사건의 수사·재판 등에 개입 (위법)

\*⑨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거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

### 부정청탁 행위 시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습니다!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직접<br>부정청탁을 한 자       | 제3자를<br>통하여<br>부정청탁을 한 자 | 제3자를<br>위하여<br>부정청탁을 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청탁을 받고<br>그에 따라<br>직무를 수행한<br>공직자 등 |
| 과태로 부과 대상 X<br>징계대상 O | 1천만원 이하<br>과태로           | 입법권<br>2천만원 이하<br>과태로<br>공직자 등<br>3천만원 이하<br>과태로 | 2년 이하 징역 또는<br>2천만원 이하 벌금             |

신분이 노출될까 걱정 마세요.

“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자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”



경기도 홈페이지 바로가기

청탁금지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?

경기도 홈페이지 (www.gg.go.kr) 접속 "소통·참여 → 경기도민 상담 → 청탁금지법 상담"